

◆2019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내역 안내문

공제구분	공제대상 및 공제금액	제출서류
기본공제	1. 본인 공제 ✓ 공제대상 : 본인 / 공제금액 : 150만원	
	2. 배우자 공제 ✓ 공제대상 : 근로자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(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) 이하인 경우 (종합소득금액, 퇴직소득금액, 양도소득금액을 포함) ✓ 공제금액 : 150만원	주민등록등본 / 가족관계증명서
	3. 부양가족 공제 ✓ 공제대상 :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(근로소득만은 총급여 500만원) 이하인 경우 (종합소득금액+퇴직소득금액+양도소득금액) 거주자의 직계존.비속, 동거입양자, 위탁아동, 기초생활수급자, 형제자매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, 형제자매 ① 연령의 제한 (장애인 : 연령 제한 없음), 남, 여 60세 이상(1959.12.31.이전 출생), 20세 이하(1999.1.1.이후 출생) (위탁아동 18세미만) ✓ 공제금액 : 1인당 150만원	주민등록등본 / 가족관계증명서 /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/ 입양사실확인서 또는 증명서 / 가정위탁보호확인서
추가공제	1. 경로우대자 공제 ✓ 공제대상 : 기본공제대상자가 12월31일 현재 만70세(1949.12.31.이전 출생) 이상인 경우 ✓ 공제금액 : 1인당 100만원	주민등록등본 / 가족관계증명서
	2. 장애인 공제 ✓ 공제대상 :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(연령제한 없음) ✓ 공제금액 : 1인당 200만원	장애인증명서 / 장애인수첩사본
	3. 부녀자 공제 ✓ 공제대상 : 본인이 여성으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①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② 배우자가 있는 여성 ✓ 공제금액 : 50만원	주민등록등본 / 가족관계증명서
	4. 한부모가족공제 ✓ 공제대상 :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✓ 공제금액 : 1인당 100만원 *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 요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한부모공제만 적용한다.	주민등록등본 / 가족관계증명서
연금보험료 공제	✓ 공제대상 :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(연금보험료)을 납입한 경우 * 급여에서 일괄 공제 납부 하므로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음.	
특별소득공제	1. 건강보험료등 공제 ✓ 공제대상 : 국민건강보험료, 노인장기요양보험료, 고용보험료 * 급여에서 일괄 공제 납부 하므로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음.	
	2. 주택자금공제 ✓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(저축납입액 X 40%), 240만원 한도 ① 주택청약종합저축,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15. 1. 1. 이후 납입은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자 해당, 기존 가입자중 7,000만원 초과자는 기존 한도(연120만원)로 2017년 납입 분까지 소득공제 - 주택담청외의 사유로 중도 해지한 경우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 안 됨. ② 무주택 세대주(단독세대주 인정) ✓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(원리금상환액 X 40%), 300만원 한도 ① 무주택 세대주 또는 주택자금공제를 세대주가 받지 않은 경우 기타 요건을 충족한 세대원 ② 국민주택규모(85㎡이하) 주택(주거용 오피스텔 포함)의 임차를 위하여 ③ 대출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일정요건의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(본인명의) -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(총급여 5천만원이하 근로자만 해당) * 2007. 12. 31. 이전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의 경우 당해 주택마련저축기관에서 차입한 것에 한함. ✓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, 300~1,800만원 한도 ① 무주택 또는 1주택소유 세대주(거주여부 상관없음) 또는 주택자금공제를 세대주가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인 근로자(실제거주에 한함) ②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 원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(13년:3억 / 14년:4억) (2014. 1. 1.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부터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도 공제가능) ③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④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(보존등기일)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것일 것 ⑤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(2008. 12. 31. 이전 차입분은 상환기간 10년 이상 포함)	저축납입증명서 / 무주택확인서 주택자금상환 증명서 / 주민등록등본 / 임대차계약증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 / 주민등록등본 / 건물등기부등본 /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/ 개별주택가격 확인서
	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✓ 공제대상 :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(본인명의) ✓ 공제금액 : 개인연금저축 연간불입액 X 40% (72만원 한도/불입액 기준 180만원 한도)	저축납입증명서
신용카드사용금액공제 ✓ 공제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, 직계존.비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, 동거입양자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) 이하인 자의 신용카드, 직불카드, 기명식 선불카드, 현금영수증 (형제자매 사용분은 안 됨) - 연령제한 없음 ✓ 공제금액 : (사용액-총급여액의 25%) X [전통시장, 대중교통, 제로페이:40%,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, 공연, 현금영수증, 직불카드 등:30%, 신용카드 사용분:15%] *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를 공제적용금액에 포함 * 공제한도액 : 연간 300만원(총급여액 7천만 원 초과 1억2천만 원 이하자:연간 250만원, 1억2천만 원 초과자:연간200만원) 과 총급여액의 20%중 적은 금액	신용카드소득공제 신청서 /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 / 현금영수증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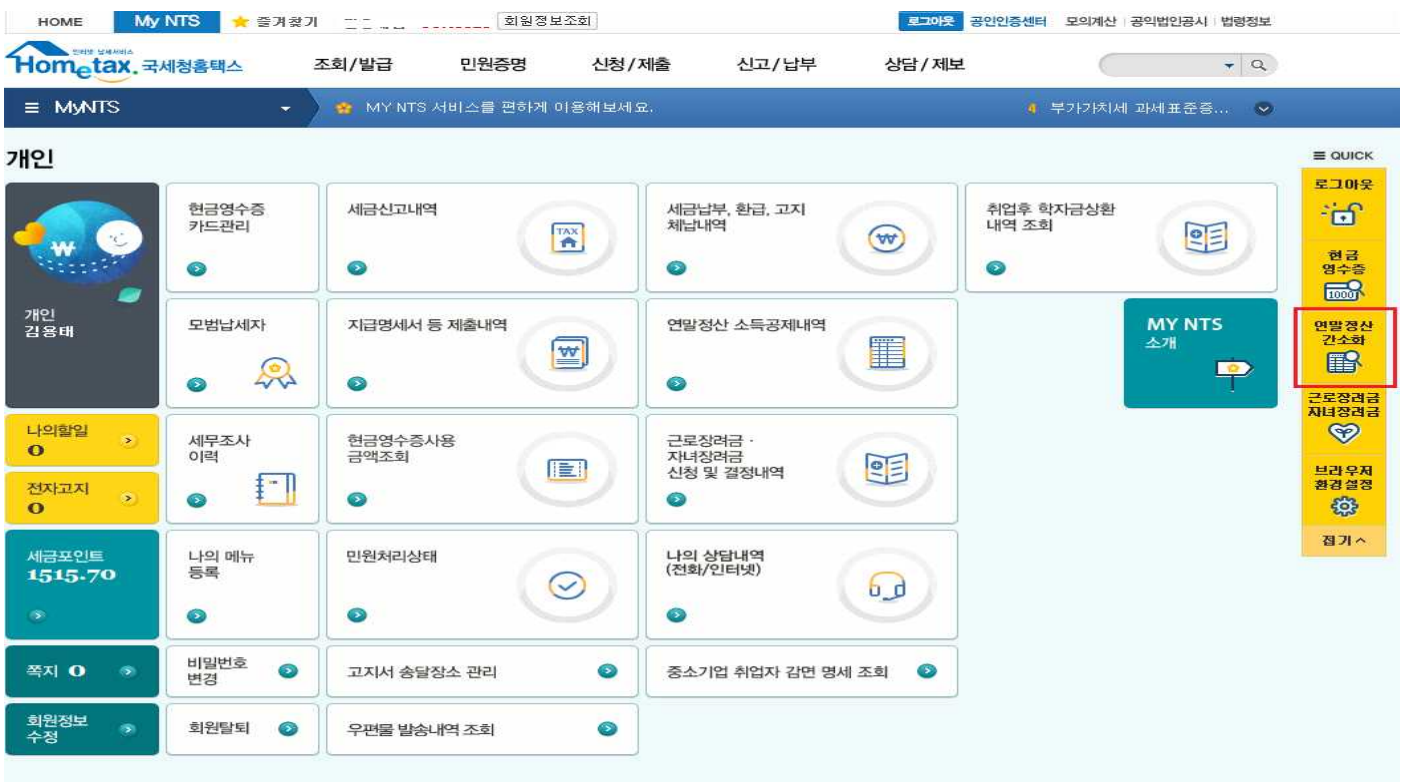
공제구분	공제대상 및 공제금액	제출서류
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공제대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 것 ② 자산총액의 40%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 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취득을 위한 저축일 것 ③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저축가입일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.이자.배당.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 ④ 적립식 저축으로서 1인당 연600만원 이내(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의 합계액)에서 납입할 것 ✓ 공제금액 : 납입한 금액의 40%(한도:240만원),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초과자는 소득공제 배제 	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납입증명서
중소기업취업자 감면 (청년 90%, 청년외 70%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등에 대한 소득세를 취업일로부터 3년.5년, 150만원 한도 감면 ✓ 대상 : 청년(만15세~34세), 청년 외(60세 이상자, 장애인, 동일직장재취업한 경력단절여성) 	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
자녀세액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기본공제대상: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(손자.손녀 공제대상 아님) - 공제금액 : 자녀1인(15만원), 2인(30만원), 3인 이상(30만원 + 2인 초과 1명당 30만원) ✓ 출생. 입양세액공제 : 1명당 30만원(첫째30만원, 둘째50만원, 셋째이상70만원) * 자녀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	주민등록등본 / 가족관계증명서
연금계좌 세액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공제대상 : 근로자가 연금저축계좌,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확정기여형 사용자부담금 제외) ✓ 공제금액 : 【 [(연금계좌 납입액, 400만원)+퇴직연금계좌 납입액] ,700만원】 X 12%(또는 15%) (총 급여액 1억2천만원,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 시 300만원) 	연금납입확인서
특 별 세 액 공 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보험료 세액공제 ✓ 공제대상 :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(연령, 소득금액 제한 있음)를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와 일반보장성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✓ 공제금액 : (보험료납입액, 100만원 한도) X 12% 또는 15%(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, 100만원한도) 	보험료 납입증명서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. 의료비 세액공제 ✓ 공제대상: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(연령, 소득금액 제한 없음)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* 공제대상의료비 : 진찰. 진료. 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, 치료.요양을 위한 의약품(한약포함)구입, 보정용 안경.콘택트렌즈구입(50만원이내), 보청기구입, 장애인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 (미용. 성형수술 비용,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) ✓ 공제금액 : [① (본인, 65세이상자, 장애인 의료비 지급액 - ②의 의료비 지급액이 총급여액의 3%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) X 15% (난임시술비는 20%) (② 그 밖의 부양가족 의료비 지급액 - 총급여액 X 3%, 700만원 한도)] X 15% 	의료비영수증등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3. 교육비 세액공제 ✓ 공제대상 :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(연령 제한 없음, 소득금액 제한 있음)를 위하여 교육기관에 지급한 금액(직계존속 교육비는 대상 아님) * 공제대상교육비 : 수업료, 입학금, 보육비용,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, 급식비, 교과서대금 (초.중.고), 중.고등학생 교복(체육복)구입비(1명당 50만원 한도), 방과 후 학교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(학원 및 체육시설은 취학 전 아동만 해당), 재향교육을 위한 지급비용, 체험학습비(연30만원).근로자가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 원리금 ✓ 공제금액 : ○ 취학 전 아동, 초.중.고등학생의 교육비 : (지급액, 300만원한도) X 15% ○ 대학생교육비 : (지급액, 900만원 한도) X 15% ○ 근로자본인 및 장애인 특수교육비 : 지급액 전액 X 15% 	교육비 납입증명서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4. 기부금 세액공제 ✓ 공제대상 : 근로자 및 직계존비속이 기부금을 지급한 경우(정치기부금은 본인명의 만) ✓ 공제금액 : ① 3천만 원까지의 공제대상 기부금 X 15% + 2천만 원 초과분 공제대상 기부금 X 30% *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,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15%, 3천만 원 초과분은 25%를 공제) ㉔ 종합소득산출세액 - [종합소득 산출세액 X (사업소득금액 + 원천징수세율을 적용 받는 이자소득·배당소득금액)/종합소득금액] ✓ 세액공제 대상 한도 - 정치자금 : 근로소득금액 전액 / - 법정기부금 : (근로소득금액 - 정치자금기부금) X 100% - 기정기부금 종교단체기부금 있는 경우 : 기준소득금액 X 10% + min(기준소득금액 X 20%, 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) 종교단체기부금 없는 경우 : 기준소득금액 X 30% * 법정(지정)기부금이 각각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5년(10년) 동안 이월하여 공제. 	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 종교단체의 소득증명서
월세액 세액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공제대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무주택 세대주 또는 주택자금공제를 세대주가 받지 않은 경우 기타 요건을 충족한 세대원 ②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(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자 제외) ③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출한 경우 (주거용 오피스텔, 고시원 포함/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 =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) ✓ 공제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 : 10%(한도75만원) / ② 총급여 5,500만원 이하자 : 12%(한도90만원) 	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등

◆ 개인별 공제자료 연말정산 파일 다운로드 방법

가. 국세청 홈택스([HTTP://www.hometax.go.kr](http://www.hometax.go.kr))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=>My NTS클릭



나. 연말정산간소화 클릭



다. 연말정산간소화=>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(부양가족의 자료를 함께 받고자 할 때)

- 간소화 자료 조회=>바로가기

연말정산간소화 이용시간

- (근로자) 소득·세액공제자료 조회 : 매일 08:00~24:00
- (영수증 발급기관) 소득·세액공제자료 제출 : 08:00~22:00
- (기부금 단체) 자료제출신청 : 08:00~24:00 (12월 중)

자료제공동의 신청 방법

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그 부양가족(자료제공자)이 동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
○ 자료조회자(근로자)와 자료제공자(부양가족)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경우

자료제공자의 인종이 가능한 경우	· 자료제공자 명의의 공인인증서, 신용카드 휴대용 필요 ·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도 신청 가능	바로가기
미성년자녀의 경우	· 자료조회자인 부모가 자신의 공인인증서로 조회 신청 가능 ·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도 신청 가능	바로가기

○ 자료조회자(근로자)와 자료제공자(부양가족)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

자료제공자의 인종이 관련된 경우 => 자료제공자의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

온라인신청	· 자료조회자가 자료제공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, 위임장 필요	바로가기
팩스 신청	· 신청서에 자료제공자와 자료조회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한 후 출력하여 팩스로 전송	바로가기
세무서 방문 신청	· 가까운 세무서 방문 신청	세무서 신청안내

서비스 이용절차

- 공인인증서 로그인 ※ 은행, 우체국 등 발급
-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바로가기
- 간소화 자료 조회** ※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월 체크 바로가기
- PDF 다운로드 및 인쇄 ※ 공제요건에 맞지 않는 자료는 체크해제
- 회사 제출 ※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자료제출 기관

라. 귀속년도 및 해당월 선택=>건강보험~기부금까지 14가지 항목 클릭=>한번에 내려 받기

소득·세액공제 자료 조회

귀속년도: 2018년 | 전체선택 | 선택해제

건강보험 (National Health Insurance)	국민연금 (National Pension)	보험료 (Insurance)	의료비 (Medical Expenses)	교육비 (Education Expenses)	신용카드 (Credit Card)	직불카드 (Debit Card)
현금영수증 (Cash Receipt)	개인연금저축/연금계좌 (Pension Savings)	주택자금 (Housing Funds)	주택마련저축 (Home Purchasing Savings)	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(Long-term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savings)	소기업/소상공인 공제부금 (Membership Fee For Small Size Enterprises)	기부금 (Donation)
13,060,957	0	1,860,353	0	0	13,752,285	72,500,327
0	0	0	0	0	0	860,000

※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소득·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확인해야 합니다.

주택마련저축 기본내역 (본인공제항목)

선택	취급기관	계좌번호	저축구분	가입일자	납입금액	계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					

선택된 내역이 없습니다.

선택 : 0 건 | 선택합계 0 원

주택마련저축 안내

국민주택규모, 무주택 세대주, 2주택 소유 여부 등의 소득공제 요건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이므로, 공제요건 확인 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자료 활용

주택마련저축의 종류

- 「주택법」에 따른 청약저축 (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)
- 「주택법」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(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)
- 폐지된 「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근로자주택마련저축 (월 납입액 15만원 이하)

마. 소득.세액 공제 자료 내려 받기=>내려 받기

=>“(근무회사명)_(이름).pdf” 형식으로 파일 명칭 저장하여 제출

※ 소득·세액 공제요건

구분		공제요건			
		나이요건	소득요건 (100만원이하)	동거요건	
				주인등록동거	일시퇴거 허용
기본공제	본인	X	X	X	
	배우자	X	O	X	
	직계존속(부모님)	60세 이상 (*59.12.31. 이전 生)	O	△ (주거형편상 별거 허용)	
	직계비속(자녀),동거입양자	20세 이하 (*99. 1. 1. 이후 生)	O	X	
	장애인직계비속의장애인배우자	X	O	X	
	형제자매	60세 이상 20세 이하	O	O	O
	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	X	O	O	O
추가공제	위탁아동	18세 미만	O		
	장애인	X	O		
	경로우대 부녀자(50만) 한부모(100만)	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(*49.12.31. 이전 生)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(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)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(20세 이하)가 있는 자 * 부녀자공제와 중복 시 한부모공제 우선 적용			
연금보험료공제	공적연금보험료의 근로자 본인 납입분만 공제 가능				
특별세액공제	신용카드등	X	O	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 과세연도 지출한 비용을 공제	
	보장성보험료	O	O		
	의료비	X	X		
	교육비	X	O		
	기부금	X	O		
표준세액공제	특별소득공제, 특별세액공제,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표준세액공제(13만원) 적용				